

**【붙임 4】**

**2015 인구주택총조사  
조사요원 근로계약서**

201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요원(□총관리자, □조사관리자, □업무보조원)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권자인 서대문구청장을 “사용자”라 칭하고 피고용자를 “근로자”로 칭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계약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“사용자”와 “근로자”의 고용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
**제2조(업무내용)** “근로자”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 업무 중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.

총관리자	조사관리자	업무보조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 총조사 담당 공무원 지원</li> <li>○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업무량 배정</li> <li>○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지도, 관리</li> <li>○ e-Census 통합시스템 관련 업무 총괄</li> <li>○ 조사용품 배부 및 관리 총괄</li> <li>○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업무지시사항 전달 및 보고</li> <li>○ 조사진행 일일 상황보고 총괄</li> <li>○ 장기부재가구 및 응답거부 가구 확인 및 처리 총괄</li> <li>○ 동 내검 총괄</li> <li>○ 조사표 정리 및 제출 총괄</li> <li>○ 기타 총조사 관련 준비 및 취합 업무 등 총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총관리자 업무 지원</li> <li>○ 조사원의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</li> <li>○ 불응가구 및 장기 부재 가구 조사지원 및 처리</li> <li>○ 인터넷조사 중도포기자 설득</li> <li>○ 가구명부 신규 등록 및 참여번호 안내 등 인터넷조사 지원</li> <li>○ 가구명부 입력 및 출력</li> <li>○ 담당 조사원의 조사실적 매일 입력</li> <li>○ 조사용품 배부 및 관리</li> <li>○ 동 내검 수행</li> <li>○ 조사표 작성 내용 검토 및 정리.제출</li> <li>○ 기타 현장조사 관련 사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담당공무원 및 총관리자 업무보조</li> <li>○ e-Census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업무 지원</li> <li>○ 홍보물 부착 등 홍보에 관한 업무</li> <li>○ 가구명부 신규 등록 및 참여번호 안내 등 인터넷조사 지원</li> <li>○ 동 내검 수행</li> <li>○ 조사표 정리 및 제출 업무(동)</li> <li>○ 조사요원 채용 관련 각종 행정지원</li> <li>○ 기타 총조사 관련 업무 및 상황실 업무보조 등</li> </ul>

제3조(채용기간) “근로자”의 채용기간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기간 중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.

구 분	총관리자	조사관리자	업무보조원
□ 채용 일수	39	39	54
.사전 준비	6	6	21
.교육	4	4	4
.준비조사	2	2	2
.본조사	23	23	23
.동 내검	4	4	4

※ 채용일수에는 유급 휴일수당, 휴일근무가산 수당은 해당 일수에 미포함.

제4조(산재보험 가입) “사용자”는 “근로자”를 채용함에 있어 채용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. 이때 보험료는 “사용자”가 납부한다.

#### 제5조(보수 지급)

- ① “근로자”의 1일 보수는 총관리자 51,030원, 조사관리자 51,030원, 업무보조원46,550원으로 하고, 이에 지급일수를 곱하여 보수를 지급한다(세금 공제 전)
- ② 보수지급 방법은 조사가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근로시간 및 휴일수당) 근로시간은 09:00 ~ 18:00으로 한다. 또한 “사용자”는 “근로자”에게 “근로자”가 1주일간 개근한 경우에 대하여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며, 휴일근로에 대하여 1일 보수의 50%를 휴일수당으로 가산 지급한다.

제7조(중도포기자의 보수 지급) “근로자”가 채용기간 중 조사업무를 중도 포기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며, 유급휴일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

**제8조(의무 및 변상책임)**

- ① “근로자”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(벌칙)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.
- ② “근로자”는 채용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“사용자”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“사용자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 하여야 한다.
- ③ 복수취업 사실이 발견된 자는 향후 3년간 통계청이 주관하는 조사에 채용을 제한한다.

**제9조(계약해지)** “근로자”가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및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“사용자”는 “근로자”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**제10조(용어해석)**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“사용자”와 “근로자”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“사용자”의 해석에 따른다.

2015 . . .

(사용자) 채용권자 : 서대문구청장

문 석 진 ①

(근로자) 피고용자(□총관리자, □조사관리자, □업무보조원)

성 명 : 서명 (인)

주민등록번호 :

주 소 :